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6. 24.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7. 6. 25.
- 다. 상정일자 : 제46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97. 7. 11)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조한영 교통지도과장)

가. 제안이유

주차장법시행령, 같은법시행 규칙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주차시간 단위 조정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등을 규정하여 주차장 설치·관리가 타지역과의 형평을 유지하고 보다 시민편의위주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정비하여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위탁관리 수수료로 100분의 30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및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노외주차장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로서 설치되는 이용자 편의시설의 범위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을 포함시킴.(안 제15조)
-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대한 내용을 정함.(안 제16조내지제18조)
-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에 따른 그 인근의 범위를 정함.(안 제19조)
-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를 정함.(안 제20조)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 1급지 및 2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수준으로 인상하고 주차시간 단위를 민영주차장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최초단위 초과시간 단위를“15”에서“10분”으로 조정함.(안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95.12.29법률 제5115호)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97. 1. 15 서울특별시 조례 제3371호)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운행시간 등 필요한사항을 정하여 구보에 고시 하도록 하고,
- 민영주차장의 설치촉진을 위해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종류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용시설, 업무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및 관람집회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에서의 야간주차 (4급지 기준) 월 정기권은 2만원인바, 이는 미시행구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확대 시행과 관련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이 조례개정이 이용자에 대해서 법이 강화 되는 것이 아닌가?
- 답변요지(교통지도과장 조한영) : 오히려 부담이 줄어듬. 15분때로 하면 1분을 세워도 15분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것을 5분을 줄임으로써 15분 단위의 요금을 내던 것을 10분 단위의 요금만 내면 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4

제출년월일 : 1997.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주차장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주차시간 단위 조정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등을 규정하여 주차장 설치·관리가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다 시민편의위주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정비하여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위탁관리 수수료로 100분의 30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
- 나.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및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다. 노외주차장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로서 설치되는 이용자 편의시설의 범위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을 포함시킴. (안 제15조)
- 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대한 내용을 정함. (안 제16조 내지 제18조)
- 마.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에 따른 그 인근의 범위를 정함. (안 제19조)
- 바.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를 정함. (안 제20조)
- 사.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1조)

아. 1급지 및 2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차시간 단위를 민영주차장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최초단위 초과시간 단위를 "15분" 에서 "10분" 으로 조정함. (안 별표1)

3. 개정근거

-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9조의3
- 주차장법시행령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7호) 제7조, 제8조, 제10조
- 주차장법시행규칙 (1996. 6. 29 건설교통부령 제69호) 제6조, 제6조의2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수반여부 : 별도조치 필요없음

첨부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 하도록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②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제15조 내지 제18조)”을 “제5장 (제22조 내지 제25조)”으로 하고, 제15조 및 제4장(제16조 내지 제21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한 이용자 편의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②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4장 부설주차장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 내의 공지로서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①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물의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차시설 배치도

2. 인근 300미터이내의 도로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축척 1200분의 1 이상 일것)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받은날로부터 5일내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등)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후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중지·폐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

제2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1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요금의 적용시기) 개정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는 공포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2시간까지		2시간초과	1일주차	월정기권	1회주차		월정기권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0분	1구획 10분	권(야간 제한함)		주간	야간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0분	주간
1급지	3천원	1천원	2천원	5천원	·	·	2천400원	800원	25만원	10만원
2급지	1천500원	500원	1천원	4천원	·	·	1천500원	500원	18만원	6만원
3급지	600원	200원	200원	3천원	5만원	·	500원	200원	4만원	2만원
4급지	300원	100원	100원	2천원	3만원	2만원	300원	100원	3만원	2만원

※ 4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은 4만원으로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유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경의선철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대흥로·용산선철도·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
 - 나. 2급지 : 1급지·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다. 3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중 상업·업무지역 인접에 있어 환승기능이 전환된 주차장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라. 4급지 : (1) 3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써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3급지 주차장중 야간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다.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자동차 10부제운행(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 수가 운행일자와 같은 때에
운행하지 않는 것)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법 제19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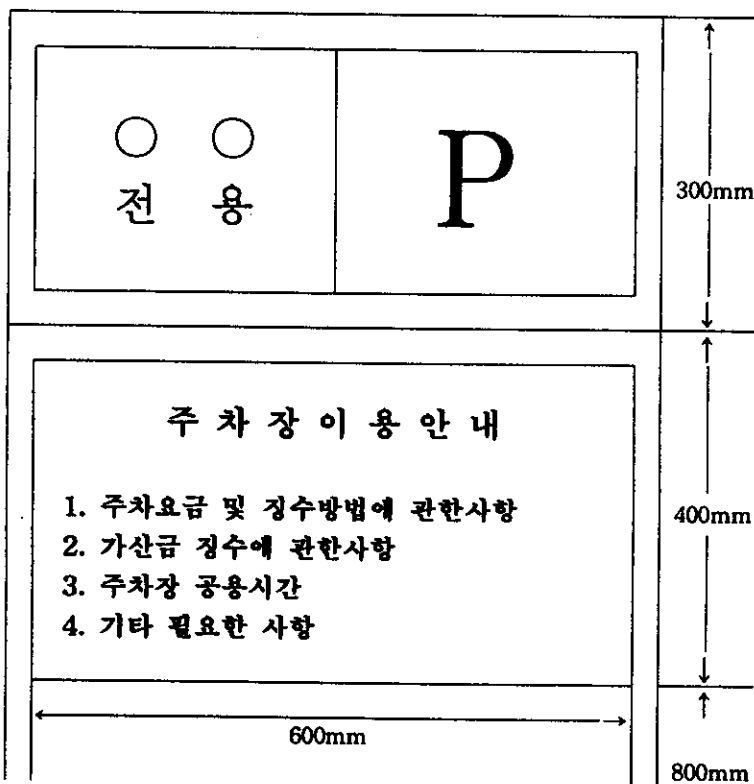
나.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8. 구청장은 출근시간대에 4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3인 이상 탑승한 자동차)
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경우 주차요금 감면시간·비율 및 대상자동차는 구
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 3, 4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전용주차장표지판(제5조제3항관련)



○ 재 료 : 알미늄, 아크릴

○ 태 : 백색

○ 바탕 : 청색

○ 문자 : 흰색, 고딕체

○ 문 안 : (주민, 화물, 외교 전용)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각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 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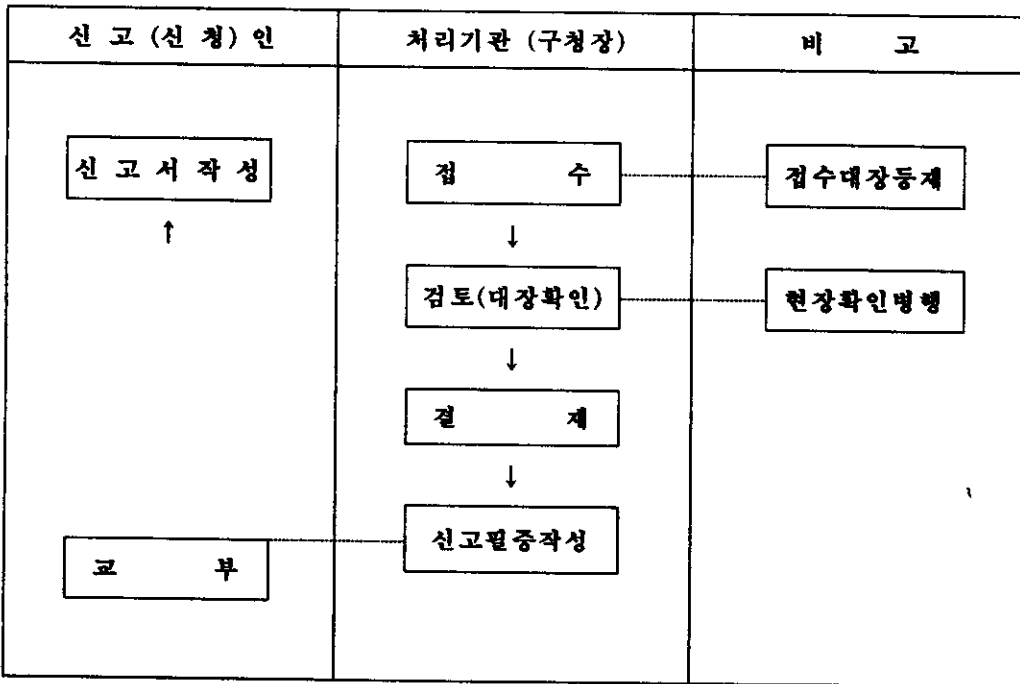
1.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랑색으로 한다.

2.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

※ 기재시 주의사항

1. ①란은 건축주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③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3. ⑤란은 주차장 명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5. ⑦란은 주차장 소재의 위치
6.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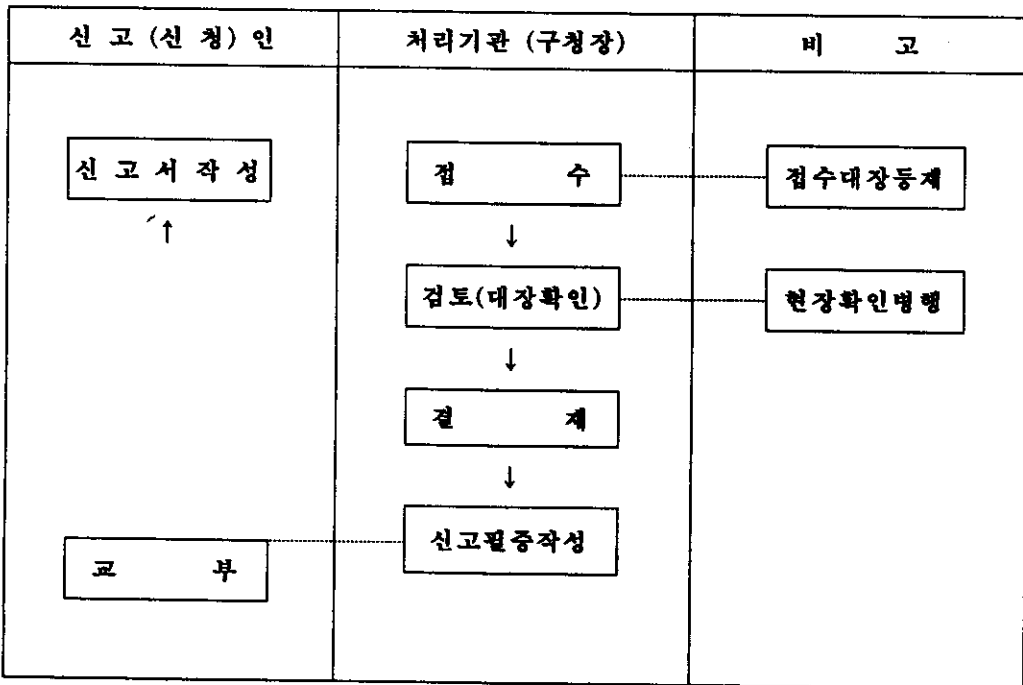
<별지 제6호 서식>

부설주차장일반이용 <input type="checkbox"/> 중지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폐지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명칭		⑥주차장의형태	
부설 주차장	⑦위치		⑧규모	
	⑨공용 신고번호		⑩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일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일	. . .
⑪ <input type="checkbox"/> 이용중지 시설규모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 시설규모			⑫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일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일	. . .
⑬ 이용중지 또는 폐지사유				
				수수료 없음
<p>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고인 ①</p> <p style="margin-left: 150px;">마 포 구 청 장 귀하</p>				
<p>신고 재 호</p> <p style="margin-left: 200px;">부설주차장일반이용 <input type="checkbox"/> 중지 신고필증 <input type="checkbox"/> 폐지</p> <p>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마 포 구 청 장 ①</p>				

※ 기재시 주의사항

1. ①란은 건축주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③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3. ⑤란은 주차장 명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5. ⑦란은 주차장 소재의 위치
6.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1조 제2항 관련)

(앞면)

	9cm	
6cm	<p>NO.</p> <p style="text-align: center;">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p> <p>. 건축물 위치 :</p> <p>. 사용자 :</p> <p>. 사용기간 :</p> <p>. 이용주차장 :</p> <p style="text-align: center;">마포구청장 ㉑</p>	

글씨 - 검정색

(뒷면)

1. 이 공영주차장 사용증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2. 앞면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 공영주차장 사용증의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4.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생략) <u><신설></u></p>	<p>제4조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p>
<p>제5조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5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②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신설>	<p><u>제15조 (노의주차장의 부대시설)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한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u></p> <p><u>②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의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u></p>
<신설>	<p><u>제4장 부설주차장</u></p>
<신설>	<p><u>제16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내의 공지로서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u></p> <p><u>②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u></p>
<신설>	<p><u>제17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①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물의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신설></p>	<p>제21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p>
<p>제4장 육자</p>	<p>제5장 육자</p>
<p>제15조 내지 제18조(생략)</p>	<p>제22조 내지 제25조 (현행 제15조 내지 제18조와 같음)</p>